

2022학년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2023년 1월

강서대학교 평가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3
2. 감사대상 및 범위	3
3. 감사기간 및 인원	3
4. 감사중점사항	3

II. 감사결과

1. 총평	4
2. 지적사항 총괄	4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5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1
1-1. 처분별 현황	11
1-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1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본 대학 내부감사 규정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 현황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 재산의 소실 여부, 행정상의 오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대학 내부자료 및 정보를 분석하고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해 차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감사대상 및 범위

가. 감사대상

- ① 대학원
- ② 융합산업학부
- ③ 부속/부설기관

나. 감사범위

최근3년을 기본으로 하되, 항목별로 확대 및 축소하여 실시

3.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추진일정	부서	비고
2022.8.8.~8.12.	융합산업학부,부속/부설기관	
2022.11.11.~11.17.	대학원	
2022.11.22.~11.28.	국제교육교류원	

나. 감사반 구성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감사반장	평가관리실	실장	안○○	
감사인	평가관리실	과장	원○○	
	평가관리실	직원	김○○	

4. 감사중점사항

가. 대학원

- 입시,학사 분야 : 입학사정, 수업, 학적, 강의 등
- 재무,회계 분야 : 회계 등

나. 계약학과(융합산업학부)

- 입시,학사 분야 : 입학사정, 수업, 학적, 강의 등
- 재무,회계 분야 : 회계 등

다. 부속/부설기관(국제교육교류원 외)

- 입시,학사 분야 : 입학사정, 수업, 학적, 강의 등
- 재무,회계 분야 : 회계 등

II. 감사결과

1. 총평

가. 대학원

- 입시 및 회계관련 분야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및 최종등록인원 부족으로 미충원 인원이 지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출결관리에관한내규」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석부를 기한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융합산업학부

- 학사 관련 분야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융합산업학부 겸임교원에 대한 연봉산정시 내부 기준에 따라 산출하지 아니하였고, 초과강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과 집행함.

다. 부속/부설기관

- 대부분의 부속/부설기관의 재무,회계 분야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으나,

국제교육교류원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28조 ②항에 따라 문서 고지를 통해 등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등록금고지서 발급 없이 등록금을 징수하였고,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 ①항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1년치를 선납 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업무추진비 성격의 회의 식대를 기타운영비 계정에서 지출함.

정보지원센터의 경우 「학사인트라넷 고도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업체인 퍼소프트와 계약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작성 3개월 후에야 최종결재권자인 총장 결재를 진행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천원, 건, 명)

총 건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
	주의 (인원)	시정	개선	권고	회수 (금액)		
6	4 (9)	0	0	1	1 (6,210)	0 (0)	0 (0)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가. 대학원

① 학사 분야

제목	출석부 미제출 및 관리 미흡	비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관리에관한내규」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출석부를 매 학기말 성적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출석부 제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치의견	◎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부 제출 및 관리 철저 요망.	

나. 융합산업학부

① 재무/회계분야

제목	연봉액 산출 부적정	비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제49조(보수)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 업적평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교직원연봉제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연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겸임교원은 「계약학과설치운영규정」 제21조 4항에 따라 학기당 3시간을 의무시수로 하게되어 있음에도, - 연봉액 산출시 학기당 3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의료 명목으로 추가 산정하여 산출함. 	
조치의견	◎ 연봉액을 산출함에 있어 「정관」 제49조(보수) 및 「교직원연봉제규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며, 부서 내부 기준으로 정한 평가기준표 및 평가등급표에 따른 등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산출 요망.	

제목	초과강의료 지급 부적정	비고
내용	<p>○ 겸임교원은 「계약학과설치운영규정」 제21조 4항에 따라 학기당 3시간을 의무시수로 하게되어 있으며, 「강의료 지급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계약에 따른 책임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수에 대해서 초과강의료 지급은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고, 교원임용계약서 제 4조 2항에도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 규정에 의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p> <p>- 산학협력단은 2020~2021학년도 융합산업학부 겸임교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함에 있어,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의 초과강의수당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강사 강의료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음.</p>	
조치의견	<p>◎ 초과강의료는 「강의료지급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기 바람. → 회수(정○○:4,950천원, 김○○: 1,260천원)</p>	

다. 국제교육교류원

① 재무/회계분야

제목	고지서 미발급 및 등록금 선납	비고
내용	<p>○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28조 ②항에 따르면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p> <p>- 국제교육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납시 고지서 발급 없이 등록금을 수납하였으며,</p> <p>○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 ①항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고, 제5조 ①항에 따르면 등록금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p> <p>- 국제교육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1년치 선납하여 받은 사실이 있음.</p>	
조치의견	<p>◎ 고지서 미발급과 관련하여서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28조 ②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하시기 바라며, 등록금 선납과 관련하여서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4조 ①항에 따라 학기별로 징수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징수하시기 바람.</p>	

제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	비고
내용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p> <p>- 국제교육교류원은 2021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업무 진행 사업의 “기타운영비” 계정에서 [붙임]과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회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조치의견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계정과목에 근거하여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p>	

라. 정보지원센터

① 일반행정분야

제목	결제 절차 미준수	비고
내용	<p>○ 정보지원센터는 2021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학사 인트라넷 고도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퍼스프트와 계약기간(2021.4.26.-2022.2.28.)까지로 하는 180,000,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54,000,000원은 2021.5.20.에 중도금 72,000,000원은 2022.1.25.에 각각 지급하였으나, 잔금(54,000,000원)은 미지급금 처리 후 2022.5.27.에 최종 지급함. 이 과정에서 정보지원센터는 2022.2.7. 퍼스프트와 시스템 오류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검수의 필요에 따라 개발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최종결제권자인 총장 결제는 2022.5.10.에 득한 사실이 있음.</p>	
조치의견	◎ 향후 결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람.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감사 대상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신분 (인원)	행정	재정 (금액)	
대학원	①출석부 미제출 및 관리 미흡	주의(2)			2023.2.28
산단(융합 산업학부)	②연봉액 산출 부적정	주의(3)			2023.2.28
	③초과강의료 지급 부적정			회수 (6,210)	2023.2.28
국제교육 교류원	④고지서 미발급 및 등록금 선납	주의(2)			2023.2.28
	⑤예산의 목적외 사용		권고		
정보지원 센터	⑥결재 절차 미준수	주의(2)			

1-1. 처분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구분	처분종류	건수	인원	금액
신분상 처분	주의	4	9	
행정상 처분	권고	1		
재정상 처분	회수			6,210